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7. 김윤의원 등 24인

나. 회부일자 : 2025. 1. 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2.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윤 의원)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며, 기본적인 진료

역량부터 세부전문 분야 수련까지 내실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재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 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어,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 수련 과정 뿐만 사유 1순위로 꼽히고 있음.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련의 본래 목적과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공의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임의·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현재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은 각 수련병원에 일임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수련교육의 질 제고 및 역량있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환자 당 적정 의사 및 간호사 수 등의 인력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방 및 중소병원, 공공병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력 채용이 어렵고 재

정적 부담이 큰 경우 수련병원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공의 수련기회 감소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 기회 감소로 이어져 양질의 지역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